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】

의안번호
699

2022. 3. 22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2. 3. 10.(남양주시장)
- 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1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2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2020 남양주 경관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경관자원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 경관정책 및 관리 방안을 재정비하고 「경관법」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나. 관계법령 및 지침

- 「경관법」 제11조 제3항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- 「경관법」 제15조(경관계획의 정비)
- 「경관법」 제7조 및 제15조
- 「경관계획수립지침」

다. 경관계획 재정비 개요

- 공간적 범위 : 남양주시 전역(458.1km²)
- 시간적 범위 : 기준연도 2021년 / 목표연도 2030년
- 주요 과제

- 2020년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재검토 및 경관계획 변경 수립
-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및 관리방안 수립과 그에 대한 체계적으로 경관을 형성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경관가이드라인 마련

라. 경관계획 재정비(안) 주요내용

- 경관권역 재정비
 - 2035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정합성 추구
 - 도시구조 및 경관변화에 따른 권역 명칭 변경
- 경관축 재정비
 - 통합경관축은 기존 축으로 재편성하고 명칭 및 대상 조정
 - 3개의 통합경관축을 역사문화경관축으로 추가 반영
- 경관거점 재정비
 - 기존 거점의 구조물 유지하고 특화경관거점은 재구분
 - 도시구조 및 경관변화에 따른 거점 명칭 및 대상 조정
-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
 - 기존 거점의 구조물 유지하고 특화경관거점은 재구분
 - 도시구조 및 경관변화에 따른 거점 명칭 및 대상 조정
- 경관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재정비
 -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축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구)

- 본 의견 청취안은 2020 남양주 경관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른 경관 자원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 정책 및 관리 방안을 재정비 하고자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.
- 주요 계획(안) 내용을 보면은 2030년 목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, 경관권역 명칭변경, 경관축(역사문화경관축) 추가 반영, 경관 거점 재구분,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등이 주요 골자이며, 본 계획

안은 주요 경관정책 변화와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남양주 경관 관리 방향 설정과 도시경관 형성·관리의 체계를 마련하였으며,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남양주 경관 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경관 재정비 시 지역주민의 합의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,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